

麗末鮮初 軍事訓練體系의 改編

尹 薰 杓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연구교수)

1. 緒 論
2. 高麗末 訓練體系의 混亂과 政府 對策의 限界
3. 朝鮮初 改編作業의 推進과 그 性格
4. 結 論

1. 緒 論

고려 말에 국제정세의 불안과 함께 외세의 침입이 끊이지 않았다. 자연히 군대의 출동이 빈번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중 하나가 이른바 ‘不教民戰’ 사태의 초래였다.¹⁾ 훈련이 안된 민들을 군인으로 징발하면서 일어난 일이었다. 전투력의 약화는 물론이고 인명 손실이 대단히 컸다. 다소의 피해는 어쩔 수 없었으나 그 정도가 참혹했다. 이로 인해

1) 『論語』의 子路篇에 나오는 말로, 고려말 정치가들이 군의 출동과 관련해서 일어났던 혼란상의 하나로 자주 인용하였다. 공민왕 21년 禹玄寶 등이 올린 국방대책에 관한 상소가 대표적 사례에 속한다(『高麗史』 卷81, 兵志 1, 兵制, 恭愍王 21年 10月, 中冊, 785쪽).

군대 및 통치체계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고조되었다. 안팎으로 큰 시련에 처했던 당시로서는 커다란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군사훈련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군통수체제가 혼란에 처하면서 변화된 현실에 부합하지 못한 방식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미 군 징집 대상층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종전의 방식을 고수해서는 대처가 힘들었다. 이제 훈련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그에 앞서 군의 편제 원리를 바꾸어야 하는 문제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당시처럼 복잡한 정치 상황하에서는 전면적 실행이 결코 쉽지 않았다.

전과 달리 전투력의 향상을 위해 군에 편입된 모든 사람들에게 전국적으로 정형화되고 표준화된 체계에 따라 교육 및 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고려 말부터 논의되기 시작했고, 일부는 실천에 옮겨지기도 했다. 위로는 良將의 양성을 위한 兵學 교육의 강화 및 그와 연계된 武科의 실시로, 아래로는 士卒의 부대 전술을 습득하기 위한 陣法訓練의 도입 등으로 표현되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었던 ‘不敎民戰’의 사태를 해소하려는 의도에서 習陣으로 체계화되면서 장차 이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었다.²⁾ 하지만 고려 말에는 혼미한 정치상황으로 제대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조선으로 이월되어 본격적인 정비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로 말미암아 비로소 정형화되고 표준화된 군사교육 및 훈련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졌다.

본고에서는 정치적 격동기였던 여말선초기에 군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훈련체계 개편작업의 성격과 그 의미를 良將의 양성을 위한 兵學 교육의 강화와 진법훈련의 도입 및 정례화된 시행, 나아가 전체가 체계화되는 과정 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는 단순히 훈련방식이 어떻게 변모

2) ‘習陣’이라는 용어는 『高麗史』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陣法演習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習戰’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에서처럼 정형화되고 표준화된 체계를 구축해서 정례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되었는가를 검토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군 조직에 일어났던 운영원리의 변동이 훈련체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구현되었는지를 고찰해 보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이 시기의 군사훈련에 대해 고찰했던 연구성과들은 방대하다. 조선에 들어와 간행되었던 진법서와 이에 의거해서 실시되었던 진법훈련이라든가,³⁾ 새로이 설립된 군사교육기관 및 교육제도의 정비문제에 관해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검토되었다.⁴⁾ 이밖에 武科를 비롯한 각종 試取制度 등을 다루면서 언급했던 것들도 다수에 이른다.⁵⁾ 이렇게 해서 군사훈련의 방식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해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주로 조선에 들어와 정비되는 과정에 중점을 두고 정리했거나 明과 北方 諸民族들 사이에서 벌어졌던 분쟁에 대비하고자 추진했던 국방력 강화의 한 수단으로 고찰했을 뿐, 정치적 격변기를 거치면서 새롭

- 3) 대표적으로 朴元燾, 『朝鮮初期의 遼東征伐論爭』, 『韓國史研究』 14, 韓國史研究會, 1976 (『明初朝鮮關係史研究』, 一潮閣, 2002 재수록); 鄭夏明, 『古兵書解題』, 陸軍本部, 1979; 許善道, 「〈陣法〉考 - 書名 <兵將圖說〉의 잘못을 바로잡음-」, 『歷史學報』 47, 歷史學會, 1981; 河且大, 「朝鮮初期 軍事政策과 兵法書의 發展」, 『軍史』 19,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1989; 최홍록, 「리조초기의 첫 군사훈련교범집인 <진도>와 정도전의 <진법>에 대하여」, 『역사과학』 1992-4; 김광수, 「鄭道傳의 '陣法'에 대한 고찰」, 『陸士論文集』 51, 陸軍士官學校, 1996; 張學根, 「鮮初 武經七書의 導入背景」, 『東西史學』 2, 東西史學會, 1996; 노영구, 「조선시대 병서의 분류와 간행 추이」, 『역사와 현실』 30, 한국역사연구회, 1998; 강성문, 「朝鮮의 兵書와 兵學思想」, 『韓民族의 軍事的 傳統』, 鳳鳴, 2000 등을 들 수 있다.
- 4) 閔賢九, 「訓練觀과 軍資寺」, 『朝鮮初期의 軍事制度와 政治』, 韓國研究院, 1983; 方相鉉, 「朝鮮前期 水軍의 戰術能力」, 『慶熙史學』 6·7·8, 慶熙史學會, 1980(『朝鮮初期 水軍制度』, 민족문화사, 1991 재수록); 沈勝求, 「朝鮮時代의 武藝史研究 - 毛毯를 중심으로 -」, 『軍史』 38, 國防軍史研究所, 1999; 尹薰杓, 「軍事教育制度의 정비」, 『麗末鮮初軍制改革研究』, 해안, 2000; 朴洪甲, 「조선시대 군사훈련기구 훈련원의 성립과 역할」, 『軍史』 43,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2001; 沈勝求, 「韓國武藝의 歷史와 特性」, 『軍史』 43,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2001; 朴洪甲, 「조선초기 훈련원의 위상과 기능」, 『史學研究』 67, 韓國史學會, 2002.
- 5) 대표적으로 尹薰杓, 「朝鮮初期 武科制度研究」, 『學林』 9, 延世大史學研究會, 1987; 沈勝求, 「朝鮮前期 武科研究」, 國民大 博士學位論文, 1994; 이성무, 「무과」, 『한국사』 25, 국사편찬위원회, 1994; 한중희, 「朝鮮初期 都試研究」, 『韓國學論集』, 啓明大學校, 1986; 沈勝求, 「朝鮮初期 都試와 그 性格」, 『韓國學報』 60, 一志社, 1990 등을 들 수 있다.

계 구축된 훈련체계의 구조 및 그 의미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하게 취급하였다.⁶⁾ 특히 이 시기에 훈련체계가 무엇 때문에 정형화·표준화 및 정례화를 지향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⁷⁾

이에 지금까지의 여러 성과들을 기반으로 여말선초 시기에 추진되었던 군사훈련체계 개편작업의 내용 및 그 성격을 새롭게 고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2장 1절에서는 고려말 ‘不教民戰’ 사태의 초래 및 그로 인한 혼란상을 간략히 검토하고, 2절에서는 위기의식을 느낀 정부가 대책을 세웠으나 오히려 문제점만 노정시켰던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전면적 개편작업이 추진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분석하려는 것이다. 다음으로 3장 1절에서는 고려말 급진개혁파를 대표하는 인물로 조선건국 직후에 정국을 주도했던 鄭道傳 등이 추진하였던 개편작업의 내용과 그 의미를 파악해 보고, 2절에서는 왕자난을 계기로 정권을 장악했던 태종계열이 사병혁파와 함께 군 통수체제를 바꾸면서 재차 수정을 가했던 훈련체계의 성격에 대해 정리

- 6) 다만 조선에 들어와 최초로 중앙의 군사훈련기구로서 설립되었던 訓練院을 다루었던 朴洪甲, 「조선시대 군사훈련기구 훈련원의 성립과 역할」, 『軍史』 43,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2001 등에서, 다른 한편으로 사냥을 통해 군사훈련을 행하던 講武를 고구했던 朴道植, 「朝鮮初期 講武制에 관한 一考察」, 『慶熙史學』 14, 慶熙史學會, 1987; 李瑀秀, 「조선초기 講武 施行事例와 軍事的 기능」, 『軍史』 45, 國防部 軍史編纂研究所, 2002 등의 연구에서 앞 시기의 혼란상을 수습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훈련체계의 정비상이 부분적으로 정리되었을 뿐이다.
- 7) 그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제가 되는 고려말 군사훈련제도의 실태에 관한 충분한 해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에 관한 연구 성과가 아직까지 미미한 실정이다. 申千湜, 「高麗時代 武科와 武學」, 『軍史』 7, 國防部 戰史編纂委員會, 1983; 文炯萬, 「高麗特殊官府研究」, 『釜山史學』 9, 釜山史學會, 1985; 宋寅州, 「恭愍王代 軍制改革의 實態와 그 限界」, 『한국중세사연구』 5, 한국중세사학회, 1998 등에 매우 개략적으로 언급되어 있을 뿐이며, 朴漢男, 「恭愍王代 倭寇侵入과 禹玄寶의 ‘上恭愍王疏」, 『軍史』 34, 國防軍史研究所, 1997에 이르러 비로소 陣法訓練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인 고찰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연구 역시 특정 인물이 주장했던 국방대책을 검토하면서 함께 다루었기 때문에 훈련제도를 전면적으로 분석했던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麗末의 군사훈련체계에 대해서는 좀더 세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하고자 한다.

이로써 왕조교체가 단행되는 복잡한 시기에 군사훈련체계가 어떠한 내용과 성격으로 개편되어 갔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해 보고자 한다.

2. 高麗末 訓練體系의 混亂과 政府 對策의 限界

(1) 軍의 出動과 ‘不教民戰’의 招來

고려말 외적의 침입이 빈번해지자 군대가 자주 출동해야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상당한 손실을 입었는데, 공민왕 11년 監察司의 上言에 따르면, 군사가 團結되지 않아 危急할 때마다 農民에서 징발하다 보니 민간을 소란케 할 뿐만 아니라, 갑작스런 사태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했다.⁸⁾ 위급한 상황에서 군사가 團結되지 않았다는 것은 조직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으며, 더구나 부족한 병력을 농민들을 징발해서 충당함에 따라 전쟁터에서 사실상 제구실을 하지 못했음을 의미했다.

외적을 방어하기 위해 농민들을 군인으로 징발했던 것이 비단 이 시기에 국한된 현상은 아니었다. 이전의 전쟁에서도 늘 단행했던 일로 생각된다. 문제는 제대로 훈련시키지 못한 채 바로 전장에 투입했다는 사실이다. 그 밖의 여러 중대한 요인들을 지적할 수 있겠지만, 우선 훈련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함에 따라 숙달되지 못한 인원들을 출동시켜 피해를 증폭시켰던 것이 치명적이었다. 그렇다고 평소에 훈련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실제로 공민왕 12년 5월에 내린 敎에 따르면, 근래 各處의 防禦軍官들이 兵士를 거느리고 아무 때나 사냥하여 짐승들의 생육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

8) 『高麗史』 卷81, 兵志 1, 兵制, 恭愍王 11年 6月, 中冊, 784쪽.

한다며 엄격히 금지하게 했다.⁹⁾ 당시 防禦軍官들이 적침이 계속되는 위급한 상황에서 아무런 명분도 없이 兵士를 동원하여 사냥했을 리는 없었을 것인데, 아마도 군사훈련을 핑계 대고 실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왜냐하면 사냥은 옛날부터 實戰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훈련의 하나로 자주 활용되었기 때문이다.¹⁰⁾ 즉, 군대를 동원해서 일정한 규범에 의거하여 사냥 시킴으로써 전투에 필요한 무예나 전법을 습득하였다. 동시에 농사에 많은 해를 끼치는 惡獸 따위를 포획하고자 철에 맞추어 실시했다.¹¹⁾ 하지만 사냥이 오락수단으로 전락하여 폐단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했다. 그런데 아무 때나 사냥했다는 것은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훈련을 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놀이나 가족 따위를 얻기 위한 행위로 떨어졌음을 의미했다. 따라서 폐단만 초래했을 뿐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훈련체계가 부실했고, 설사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폐해만 낳는 상태에서도 적침은 계속되었으며, 그 때마다 민을 군인으로 동원했기 때문에 혼란이 점차 극에 달했다. 공민왕 21년 10월 禹玄寶 등의 上疏에 따르면, 國家는 평소 예비함이 없고 백성은 싸우는 것을 알지 못하다가, 일단 變이 일어나면 서둘러 강제로 卒伍에 충당하니,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고도 흩어져 버린다고 했다.¹²⁾ 사변이 일어나 갑자기 훈련받지 못한 민들을 군사로 동원함으로 인해 전투 전에 스스로 붕괴될 정도였다는 지적은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짐작하게 한다.

9) 『高麗史』卷84, 刑法志 1, 職制, 恭愍王 12年 5月, 下冊, 846쪽.

10) 『周禮』夏官司馬條에 “以蒐狩習戎旅”라고 되어 있는데, 蒐는 봄의 사냥, 狩는 겨울의 사냥으로서, 蒐狩는 곧 狩獵을 말한다(李基白, 『高麗史兵志譯註』, 1969, 一潮閣, 27쪽). 실제 사냥을 통해 실시하는 군사훈련에 관해서는 金瑛河, 『高句麗의 巡狩制』, 『歷史學報』 106, 歷史學會, 1985; 朴道植, 앞의 논문; 金瑛河, 『百濟·新羅王의 軍事訓練과 統帥』, 『泰東古典研究』 6,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1990; 李瑀秀, 앞의 논문 등의 연구 성과들이 참조된다.

11) 朴道植, 앞의 논문, 391쪽.

12) 『高麗史』卷81, 兵志 1, 兵制, 恭愍王 21年 10月, 中冊, 785~786쪽.

한편, 위 上疏를 제출했던 때와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국방대책을 건의했던 僕長壽도 연해지역의 방수처에 鎭戍하던 兵卒들조차 오합지졸의 무리들로 평소 훈련의 엄격함이 거의 없다고 했다.¹³⁾ 전반적으로 기존의 군대조차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교육도 받아본 적이 없는 민까지 대거 동원했다는 것은 체계적인 통솔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 결과 적과의 전투를 앞둔 상태에서 스스로 붕괴될 위기를 자초하였다.

정부가 나서 국방력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안에 ‘不教民戰’ 사태의 해소를 위한 군사훈련체계의 정비 문제가 포함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다.

(2) 政府 對策의 限界와 混亂의 增大

군대를 운영하면서 군사훈련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미 공민왕 때 반원개혁정치를 단행하면서 군의 통수권 장악, 그리고 적의 반격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력 강화를 서둘러 추진했는데,¹⁴⁾ 이와 더불어 강병 육성을 위해 훈련체계도 함께 정비하였다. 그 시작은 공민왕 11년 習射都監을 복립하고 丙科權務를 책임자로 삼았던 조치였다.¹⁵⁾ 習射都監은 본래 전기에 설립되었지만,¹⁶⁾ 독자적인 군사훈련을 경계했던 원간섭기에 들어와 제구실을 못했던 것 같다. 마침내 충혜왕 후4년에 習射場을 혁파하고 東西大悲院에 소속시켜 城中의 病人들을 모아 치료하며, 옷과 먹을 것을 제공하는 일에 활용되면서¹⁷⁾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13) 『高麗史』 卷112, 列傳, 僕遜 附僕長壽, 下冊, 456쪽.

14) 尹薰杓, 앞의 책, 101~102쪽.

15) 『高麗史』 卷77, 百官志 2, 諸司都監各色, 中冊, 693쪽. “習射都監恭愍王十一年爲丙科權務.”

16) 이는 “習射都監 雜職將校二”(『高麗史』 卷83, 兵志 3, 看守軍, 中冊, 817쪽)라는 기사의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17) 『高麗史』 卷36, 世家, 忠惠王 後4年 3月 丙子, 上冊, 736쪽.

그런데 반원개혁의 하나로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면서 習射都監을 복립하여 군사훈련 가운데 가장 기본에 속하는 활쏘기 연습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체계적으로 이를 관리하고자 했다. 도감을 복립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했는가는 명확치 않지만 習射場을 새로 조성한다거나 習射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활쏘기 연습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前述했던 바와 같이 實戰 감각을 익히기 위해 사냥 등의 방법을 활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防禦軍官들이 아무 때나 행함으로써 폐단만 낳았고, 여기에 개혁정치의 부진 등으로 통수체계의 혼란이 겹치면서 ‘不教民戰’ 사태가 해소되지 못했다.

군사조직의 정비와 더불어 체계적인 훈련의 실시가 또 다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던 것은 辛旽이 제거된 직후에 천명되었던 국정개혁에 관한 여러 방안들이었다. 먼저 공민왕 20년 7월 李進修의 상소에서는 軍帥府를 설립해서 軍務를 統紀케 하되,¹⁸⁾ 궁궐 시위를 한층 엄하게 하기 위해 四十二都府와 忽赤·忠勇의 各四番을 均分하게 속하게 하며, 사졸을 훈련시키고 器械를 嚴明하도록 할 것 따위를 건의했다.¹⁹⁾ 李進修의 방안은 侍衛軍에 국한된 것처럼 보이는데, 조직개편과 함께 체계적인 훈련의 실시를 연계시키려 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같은 해 11월에 사헌부에서도 兵器의 修繕 및 사졸의 훈련에 대한 문제를 상소하였다.²⁰⁾ 이듬해에는 禹玄寶 등이 국방대책에 관해 上疏했는데, 미리 장수를 뽑고 병졸을 모아 훈련시키되, 귀로는 金鼓에, 눈으로는 旌旗에 익숙해지도록 만들어야 실제 전투에 참가했을 때 놀라지 않게 되며, 비록 강한 적을 만나더라도 용감하게 싸워 질서를 잃지 않게 된다고 주장하였다.²¹⁾

18) 『高麗史』 卷811, 兵志 1, 兵制, 恭愍王 20年 7月, 中冊, 785쪽.

19) 『高麗史』 卷82, 兵志 2, 宿衛, 恭愍王 20年 7月, 中冊, 794쪽.

20) 『高麗史』 卷43, 恭愍王 20年 11月 丙寅, 上冊, 842쪽.

21) 『高麗史』 卷81, 兵志 1, 兵制, 恭愍王 21年 10月, 中冊, 785쪽. 그런데 禹玄寶 등의 上疏에서 거론된 “耳熟金鼓 目慣旌旗”가 陣法訓練, 특히 조선에 들어와 鄭道傳 등이 추진했던 것과의 연관성 여부를 검토했던 연구가 있어 주목된다(林漢男, 앞의 논문, 68~70쪽).

국방대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국왕도 選軍給田의 구제를 회복시키는데²²⁾ 동시에 文武 어느 한쪽을 폐할 수 없으니 중앙의 성균관부터 지방 향교에 이르기까지 文武兩學을 개설해서 인재를 양성하여 등용에 대비하라는 교서를 내렸다.²³⁾ 본래 武學은 武人들의 講藝를 위해 설립했는데,²⁴⁾ 문종 때 武學博士가 있었고, 예종 때 국학 7개의 하나로 무학재를 설치했다가 인종 때 폐지시켰던 것을 이때에 이르러 부활시키려 했다.²⁵⁾

하지만 이런 조치들이 결실을 맺기 전에 공민왕이 갑자기 피살되었고, 이어 어린 우왕이 등극하자 정세가 급변하였다. 특히 그 여파로 明과의 외교관계가 크게 악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커다란 두통거리였던 왜구의 침입은 갈수록 격렬해졌다.²⁶⁾ 위기가 고조되면서 군사력 증강에 부심할 수밖에 없었고, 자연히 총력 방위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²⁷⁾ 즉, 京外에 걸쳐 동원 가능한 자원을 모두 군대로 징발함으로써 총력전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고 했다.²⁸⁾ 그러나 군사훈련과 관련된 상황은 여전히 호전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우왕 9년에 올린 李成桂의 安邊策에 따르면, 훈련이 안된 병사들을 흠어 놓았다가 적이 침입한 뒤 창황히 소집하니, 도착할 즈음이면 적은 이미 노략질을 끝내고 돌아가 버린 뒤였다고 한다. 그리고 旗를 휘두르고 북을 쳐서 지휘하는 신호에 익숙하지 못하며, 치고 찌르는 기술도 습득하지 못해 적과 싸워 승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따라서 병사

22) 『高麗史』 卷81, 兵志 1, 兵制, 恭愍王 20年 12月, 中冊, 785쪽.

23) 『高麗史』 卷74, 選舉志 2, 學校, 恭愍王 20年 12月, 中冊, 629쪽.

24) 申千湜, 앞의 논문, 171쪽.

25) 申千湜, 「중앙의 교육기관」, 『한국사』 17, 국사편찬위원회, 1994, 50쪽.

26) 朴漢男, 「고려왕조 멸망의 배경」, 『한국사』 19, 국사편찬위원회, 1996, 179~180쪽.

27) 尹薰杓, 앞의 책, 120쪽.

28) 그것은 우왕 3년 7월의 開城府狀에 집약되었는데, 京中과 各道 各官에 걸쳐 동원 가능한 자원을 군대로 징발시키되, 그 위에 능력별·재주별로 兵種을 구분, 즉 射御에 뛰어난 자는 馬兵에 소속시키고, 그렇지 못하면 步卒로 분류했다가 槍·劍·白棒 등을 지니는 부류로 제차 편제시키도록 하는 방안으로 구상되었다(『高麗史』 卷81, 兵志 1, 兵制, 禎王 3年 7月, 中冊, 787~788쪽).

들을 훈련시켜 기율을 엄하게 하고 호령을 분명히 했다가 변이 일어나면 즉시 동원할 것을 건의하였다.²⁹⁾ 이를 통해 군사훈련체계의 부재로 인한 혼란과 피해가 여전함이 확인된다.

李成桂가 安邊策을 올린 직후 明과 군사적으로 직접 충돌하는 일이 발생했다. 明은 고려가 北元과 통교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우왕 10년 11월에 女眞千戶가 인솔하는 遼東兵 70餘騎를 北靑州로 보내 北元使를 잡으려 했다. 이때 明軍이 고려의 안으로 침입했다.³⁰⁾ 하지만 그 전에 요동에 갔던 고려 사신이 정보를 입수하여 都堂에 알렸던 관계로 미리 대비했기에 明軍을 격퇴할 수 있었다.³¹⁾

어쨌든 영역 안에서 明軍과 전투를 벌였다는 사실은 위정자들에게 커다란 충격이었다. 명과 우호적 외교관계는 유지하되 영토 침입이나 영역을 넘어서는 간섭은 물리치겠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³²⁾ 이때 필연적으로 새로운 국방대책이 요구되었는데, 明軍을 격퇴한 직후 군사훈련기구를 신설 하였으니, 곧 武藝都監이었다. 이는 우왕 10년 12월 譯人中郎將 郭海龍의 건의에 따라 설립되었다.³³⁾ 郭海龍에 관해서는 기록이 충분치 않아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기 어려우나 아마도 요동에 갔던 사신을 수행하면서 明軍에 관한 정보를 탐지해냈던 인물이 아닌가 한다. 그 때문에 譯人에 불과했던 그의 건의를 받아들여 都監을 설립하고, 군사훈련을 담당케 했던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武藝都監에 관한 상세한 사정은 다음 사료를 통해 알 수 있다.

(가) 우왕이 馬巖에서 講武하는 것을 시찰하면서 敎戰을 능숙하게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武藝都監使 成仲庸과 李贊을 채찍으로 벌하였다. 여러 군사

29) 『高麗史』 卷81, 兵志 1, 兵制, 禡王 9年 8月, 中冊, 789~790쪽.

30) 金順子, 『麗末鮮初 對元·明關係 研究』,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9, 59~69쪽.

31) 『高麗史』 卷135, 列傳, 禡王 10年, 11月, 下冊, 921쪽.

32) 金順子, 앞의 논문, 70쪽.

33) 『高麗史節要』 卷32, 禡王 10年 12月, 804쪽.

들이 북치고 소리지르며 훈련을 실시하였는데 부상자가 자못 많았다.³⁴⁾

(나) 馬巖에서 講武하는데, 갈라서 兩陣으로 만들기를 각기 諸色匠人으로써 하되,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든 者를 一隊로 삼고, 槍旗를 잡은 者를 (다른) 一隊로 삼아, 弓手軍으로써 따르게 하였다. (兩陣이) 북치고 소리지르며 서로 치니 부상한 자가 자못 많았다.³⁵⁾

(가)에 의해 武藝都監이 군사훈련인 講武를 담당하는 부서였으며, 책임자로 2명의 武藝都監使가 임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나)를 통해 구체적으로 都監에서는 諸色匠人으로 구성된 兩陣을, 특히 보유 장비로 보아 一隊는 방어진을, 다른 一隊는 공격진을 짠 다음 서로 대련하는 방식으로 훈련하되, 아울러 弓手軍이라는 원거리 공격 및 적의 후방을 노리는 부대를 가미시켜 실전에 가깝게 연습했다고 생각된다. 주로 창술과 궁술을 구사하는 부대를 결합시켜 진열을 형성하여 전투하는 방식으로 연습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武藝都監이 단지 군사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던 것만은 아니며, 다른 정치적 의도도 작용했다고 사료된다. 우선 武藝都監使 중의 하나인 成仲庸은 우왕 14년 1월 林堅味·廉興邦黨이 숙정될 때 함께 처형되었던 인물이다. 廉興邦의 異父兄인 李成林³⁶⁾黨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³⁷⁾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다음 사료의 내용이 주목된다.

하루는 大闕을 毬庭에서 거행하려고 하는데 大司憲 任獻은 (廉)興邦의 妹婿였는데, 臺吏를 보내 都堂에 告하기를, “이 毬庭은 先王이 大朝會를 行禮하던 장소일 뿐만 아니라 景靈殿과 인접하는데, 太祖 이하 역대 임금의

34) 『高麗史』 卷135, 列傳, 禡王 11年 1月, 下冊, 922쪽.

35) 『高麗史』 卷81, 兵志 1, 兵制, 禡王 11年 1月, 中冊, 790쪽.

36) 李亨雨, 「高麗 禡王代 政治的 推移와 政治勢力 研究」,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9, 157쪽.

37) 『高麗史』 卷126, 列傳, 姦臣 2, 林堅味, 下冊, 744쪽. “又斬(李)成林黨前判書成仲庸.”

神位가 있는 곳 근처에서 어찌 軍士를 풀어놓고 그 사이에서 말을 달리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으므로 興邦이 말하기를, “玄陵이 일찍이 五軍을 이곳에서 閱兵한 일이 있었으니 그 閑曠을 취한 까닭이었다”라고 하였으나 獻이 不可하다고 고집하였다. 이에 興邦은 怒하여 말하기를, “講武의 일은 비단 都堂만이 아니라 憲司에서도 深慮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였고 (禹)玄寶도 臺吏에게 말하기를, “그만 그치라”고 하였다.³⁸⁾

위 기사와 같은 내용이 『高麗史節要』 우왕 11년 1월조에도 실려 있다.³⁹⁾ 그리고 같은 달 馬巖에서는 成仲庸과 李贊이 주관하는 講武가 실시되었다. 그런데 위 기사에서 廉興邦은 毬庭에서 거행되는 大閱이 講武임을 명시하였다.⁴⁰⁾ 그러므로 시기상으로는나 葉鴻방의 언급으로는나 구정에서의 대열과 마암에서의 연습이 모두 강무였음이 분명했다.

무예도감을 설치하고 곧 이어 적잖은 반발을 무릅쓴 채 대열을 실시하려고 한 이유가 궁금하다. 먼저 대열의 실시를 적극 찬성하였던 葉鴻방의 의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異父兄의 黨人인 成仲庸이 무예도감의 책임자에 임명되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위 사료에서 “講武의 일은 都堂만이 아니라 憲司에서도 深慮해야 할 일이다”라는 그의 언급을 통해 都堂으로 하여금 郭海龍의 건의를 수용해서 무예도감을 설립하는 데 자신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을 내비쳤다.⁴¹⁾ 그리고 葉鴻방 등이 추진했던 대열에 대해 적극 호응했던 우현보는 이미 공민왕 때 군사력 강화를 위해 훈련의 실시를 건의했던 바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열과 더불어 무예도감의 강무에 대해서도 지지를 보냈을 가능성이 컸다.

38) 『高麗史』 卷126, 列傳, 廉興邦, 下冊, 745쪽.

39) 『高麗史節要』 卷32, 禡王 11年 1月, 804쪽.

40) 본시 大閱은 왕의 참관하에 행하는 習陣이다(韓祐勳等, 『譯註經國大典註釋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6, 624쪽).

41) 葉鴻방이 삼사좌사의 관직을 띠고 있던 시점에서 그의 동생 김정수, 그리고 우현보와 함께 국무를 장악하여, 모든 일을 구두로만 처리하였고 어떤 것은 우왕에게 아뢰지도 않았다고 한다(李亨雨, 앞의 논문, 195~196쪽).

그런데 염홍방 및 그와 긴밀히 연계된 인물들이 무예도감의 설립을 통해 강무를 주관하며, 대열을 실시했던 것이 단지 군사훈련을 강화하려는 의도 뿐만 아니라 군의 통수권 장악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었는가 한다. 우왕 대에 들어오면 牌記 따위를 통해 사병화가 크게 진전되면서 통수권이 여러 계통으로 분산되었다.⁴²⁾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행사했던 인물은 崔瑩이었다.⁴³⁾ 하지만 최영은 염홍방·임견미 등과 정치적으로 반목했는데, 거기에는 지휘권을 누가 장악할 것이냐의 문제가 깊이 관련되었다.⁴⁴⁾ 이에 염홍방 등은 훈련도감의 설립과 함께 추진된 대열을 통해 군사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그것을 구실로 통수권 장악을 꾀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염홍방 등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훈련 강화보다도 정치적 목적이 앞섰던 탓인지, 우선 내부의 의견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妹婿였던 任獻조차 구정에서 대열을 거행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그리고 (가)에서 보는 것처럼 마암에서 강무할 때 국왕에 의해 使들이 공개적으로 책벌을 당함에 따라,⁴⁵⁾ 이미 시작할 때부터 위신에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밀고 나가기가 매우 힘들었다. 그 뒤에 무예도감이 거의 언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자연히 소멸되어 버린 것이 아닌가 한다.

기구복립 및 설립 등을 통해 군사훈련을 강화시키고자 했던 정부의 시도가 성공을 거두지 못하거나 지지부진했던 반면 몇몇 장수, 대표적으로 최영의 휘하 군대는 잘 훈련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⁴⁶⁾ 이와 관련해서 최영

42) 閔賢九, 앞의 책, 102쪽.

43) 吳宗祿, 「高麗後期の 軍事 指揮體系」, 『國史館論叢』 24, 國史編纂委員會, 1991, 241~242쪽.

44) 柳昌圭, 「高麗末 崔瑩 勢力의 형성과 遼東攻略」, 『歷史學報』 143, 歷史學會, 1994, 48~51쪽.

45) 우왕은 최영에 대한 신뢰감을 표하는 것을 통해 염홍방 일파를 견제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高麗史』 卷113, 崔瑩傳을 참조).

46) 『高麗史』 卷113, 列傳, 崔瑩, 下冊, 482쪽 및 柳昌圭, 앞의 논문, 34~35쪽. 그런데 후자는 그것이 다른 장수의 부대와 달리 전문성이 강한 집단을 거느렸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이 慶千興과 私兵을 거느리고 東郊에서 대대적으로 사냥하였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⁴⁷⁾ 兩人이 거느렸던 사병은 당시 상황에서 휘하의 군대였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한편 그들에 대한 인물평에서 미루어 보면, 여흥보다는 실전 연습을 위한 측면이 강했다. 그렇다면 최영 등이 군대를 독자적으로 맹렬히 훈련시켰던 것인데, 그에 힘입은 탓인지 한차례 패배를 당한 적이 없다는 명성을 얻었다.⁴⁸⁾ 그것은 어디까지나 훈련의 충실함으로 인한 성과였을 것인데,⁴⁹⁾ 당시 군의 일반적 상황과는 상반된 양상을 보여주었다. 즉 공양왕 1년 12월의 憲司上疏에서는, 軍士를 동원한지 30여 년이나 지났는데도 軍政에 체통이 없어 전술이 없는 將帥로써 가르치지 않은 民으로 하여금 싸우게 해서 적의 기세를 바라보기만 해도 무너져 도망치는 실정이라고 했다.⁵⁰⁾

최영과 같은 소수의 장수가 거느린 군대는 잘 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憲司上疏의 언급처럼 다른 장수들의 능력이 부실하다면 소용이 없었다. 어차피 몇 군데 연속해서 뚫리면,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것이 시간문제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군통솔체계가 기저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대책 마련이 시급했는데, 그 동안 정부에서도 몇 차례 조치를 취했으나 한계가 컸던 바, 이제 단순히 훈련을 강화하는 것으로는 대처가 힘들고, 전반적인 체제 개편이 수반되어야 했다.

제시하였다.

47) 『高麗史節要』卷28, 恭愍王 14年 5月, 713쪽.

48) 『高麗史』卷113, 列傳, 崔瑩, 下冊, 494쪽.

49) 최영에 버금가는 군사력을 거느렸던 이성계도 마찬가지였다. 동북면을 방문했던 鄭道傳의 눈에 비친 이성계의 군대는 號令이 明肅하고 卒伍가 整齊되어 있어 이런 군대로 무슨 일인들 성공하지 못하겠는가라는 탄사를 나오게 했다(『太祖實錄』卷14, 7年 8月 己巳, 1冊, 134쪽). 이 역시 병사들을 꾸준하게 훈련시켰던 결과에서 기인했을 것이다.

50) 『高麗史』卷81, 兵志 1, 兵制, 恭讓王 1年 12月, 中冊, 792쪽.

3. 朝鮮初 改編作業의 推進과 그 性格

(1) 麗末 急進改革派의 改編案 提起와 朝鮮成立直後의 實踐

위화도회군 이후 정계를 주도했던 급진개혁파 사대부들에 의해 군제의 전면적인 개편작업이 추진되었는데, 훈련체계도 포함되었다. 먼저 공양왕 1년 12월 憲司의 上疏를 통해, 前銜官을 三軍 및 府衛에 속하게 하고서 이를 軍簿司에 통속시켜 上下가 서로 매여 體統이 서로 연결되면 軍政이 하나에서 나오고 衆心이 하나에 통합될 것이라고 했다. 그런 다음 軍旣을 밝혀 士卒을 訓練시키면 百萬大衆이 마치 몸이 팔을 놀리고 팔이 손가락을 펴는 것과 같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⁵¹⁾

이것은 급진파 사대부들이 개혁에 관해 제시했던 원칙인데, 그간의 대책이 軍政과 軍旣, 그리고 訓練體系를 각각 분리해서 문제 해결을 시도했기 때문에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보고, 군정 및 군령에 관한 문제들을 별개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시켜 개편작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와 병행하여 체계적인 훈련을 실시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여겼다. 그리고 핵심을 衆心이 하나로 되게 만드는 것에 두었다.

이때 衆心이 하나로 된다는 것은 상하간의 신뢰가 싹터 강한 유대감이 조성되는 것을 의미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장수가 무능해서는 곤란했다. 휘하의 사졸들을 제대로 훈련시키지도 못하거나 오히려 불신만 키워 갈등만 확산시킬 우려가 컸다. 따라서 급진파들은 장수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 무반의 양성을 전제로 사졸들을 충실하게 훈련시키는 체계를 확립하고자 했다. 그렇게 되어야 상호 신뢰가 싹터 최종 목표인 衆心이 하나로 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식했다.

51) 위와 같음.

이 같은 원칙에 따라, 훈련체계의 개편작업에서 사졸들에 대한 조치뿐만 아니라 良將의 양성을 위한 교육에 대해 큰 비중을 두었던 것이 급진과 방안의 특징이었다. 후자의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훈련체계 전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군사교육체계에 대한 대대적 개편을 단행했다. 먼저 공양왕 1년에 十學教授官을 설치하면서 兵學의 경우 軍候所에 예속시켰다.⁵²⁾ 十學教授官의 설치동기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으나,⁵³⁾ 鄭道傳이 十學都提調가 되어 詳明太一諸算法을 가르쳤다는 점으로 미루어 당시 개편작업과 연관이 깊었던 것은 확실하다.⁵⁴⁾ 이어서 공양왕 2년 윤4월에 都評議使司의 건의에 따라서 武科를 도입하였다.⁵⁵⁾ 아마도 새로이 兵學에서 교육받은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해서 무반으로 선발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렇게 해서 실력이 검증되는 무반을 양성하는 제도와 장치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고려 말에는 대개 개편안을 제기하는 것에 머물렀으며,⁵⁶⁾ 본격적인 실천은 조선에 들어와 이루어졌다. 초창기 군사분야의 개편을 주도했던 것은 주지하듯이 정도전이었다. 그는 먼저 태조의 즉위교서를 통해, 文武兩科를 偏廢해서는 안 된다고 하며, 訓練觀에서 주관하는 무반의 등용시험인 講武法의 실시를 천명했다.⁵⁷⁾ 이와 더불어 개국과 동시에 단행된 관계개혁에서 訓練觀을 새로 설치했는데, 武藝를 訓練하고 兵書·戰陣을 教習시키는 등의

52) 『高麗史』 卷77, 百官志 2, 諸司都監各色, 十學, 中冊, 694쪽; 『高麗史節要』 卷34, 恭讓王 1年 4月, 847쪽.

53) 申千湜, 앞의 논문, 1994, 48~49쪽.

54) 『太祖實錄』 卷14, 太祖 7年 8月 己巳, 1冊, 134쪽. 그런데 “太一算 兵家要務”(『太祖實錄』 卷6, 太祖 3年 12月 乙亥, 1冊, 72쪽)라 하여 당시 兵家, 즉 兵學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취급했다. 그러므로 鄭道傳이 軍候所에서 직접 教授했을 가능성도 있다.

55) 『高麗史』 卷74, 選舉志 2, 科目 2, 武科, 恭讓王 2年 閏4月, 中冊, 617쪽.

56) 前朝, 즉 고려 말기에는 법령이 廢弛되어 中軍軍候所의 陣圖의 法과 敎學의 명칭이 모두 文具가 되어버렸다고 했던 것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太祖實錄』 卷4, 太祖 2年 7月 丙辰, 1冊, 46쪽).

57) 『太祖實錄』 卷1, 太祖 1年 7月 丁未, 1冊, 22쪽.

일을 담당했다.⁵⁸⁾ 이전 고려식 관제와 달리 군사훈련을 관장하는 최고의 기구가 설립되어 그에 관련된 여러 사항을 관장하였다. 그리고 훈련관에 兩班子弟와 各成衆官·各領의 可敎者들을 모아 兵書와 陣圖를 강습하되, 그중 재주를 성취한 자가 있으면 전에 내린 敎旨에 의거하여 시취해 탁용하도록 했다.⁵⁹⁾ 여기서 양반자제란 아직 관직에 나가지 않은 자제들을, 各成衆官은 당시 궁중숙위의 한 축을 이룬 成衆愛馬를, 各領은 숙위조직 十衛의 하급부대인 領을 가리키며, 可敎者란 그들 중에 특별히 병학을 강습받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자들을 의미했다.⁶⁰⁾ 그리고 앞서 태조의 즉위교서에 의거하여 훈련관에서 실시하는 강습 과정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사람들을 시취해서 탁용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처럼 설치와 더불어 훈련관은 명실공히 병학 교육과 무반 선발의 중추 기구로 자리잡기 시작했는데, 태조 3년 1월에는 中軍軍候所마저 흡수하였다.⁶¹⁾ 그 다음 관내에 兵家の 要務라는 太一筭을 강습하는 局을 설치하여 그 成才者도 武科內에서 並試하여 탁용하게 했다.⁶²⁾ 이렇게 해서 한층 더 내실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왕조 초창기의 복잡한 정치상황하에서 신진들의 병학 교육 및 선발에만 전념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더 중시되었던 것은 기존의 무반들을 새로운 체제에 적합하도록 개조하는 일이었다.

58) 『太祖實錄』卷1, 太祖 1年 7月 丁未, 1冊, 24쪽.

59) 『太祖實錄』卷1, 太祖 2年 7月 丙辰, 1冊, 46쪽. 그런데 태조의 즉위교서에서는 『武經七書』와 射御의 제예를 강습하도록 했는데, 여기서는 兵書와 陣圖라고 하여 射御 대신에 陣圖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다고 射御가 완전히 제외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무반의 기본에 속하는 技藝이기 때문이다. 다만 陣圖가 더 들어간 것은 당시 군제개혁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태조 2년 11월에 정도전이 왕에게 건의하여 여러 절제사들의 거느린 군사 중에서 武略이 있는 사람을 뽑아 『陣圖』를 가르치게 하였기 때문이다(『太祖實錄』卷4, 太祖 2年 11月 庚戌, 1冊, 51쪽). 이는 정도전의 주관으로 추진되었던 군제개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60) 尹薰杓, 앞의 책, 209~210쪽.

61) 『太祖實錄』卷5, 太祖 3年 1月 壬子, 1冊, 53쪽.

62) 『太祖實錄』卷6, 太祖 3年 12月 乙亥, 1冊, 72쪽.

재교육을 통해 새 왕조에서 필요로 하는 무반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다. 그 방안 역시 정도전이 강구했다. 그는 태조 3년 2월 병제개편에 관한 상서에서, 衛領職者 중에 幼弱者나 無才者 등을 제거하고 親軍衛에 속한 原從侍衛員人·訓練觀習兵法員人과 太乙習筭員人 가운데 각기 소속 官으로 하여금 保學하게 하며, 신체를 살피고 재주를 시험해서 보충하자고 했다.⁶³⁾ 부적합하거나 무능력하다고 판정된 사람들을 도태시키는 대신 태조의 휘하친병 계열인 親軍衛의 原從侍衛員人⁶⁴⁾ 및 훈련관 등에서 교육받으면서 검증된 사람들로 채우자는 것이다. 그 중에는 신진도 포함되었을 것이나 기존 인사가 상당수였을 것인데, 대체로 병학 교육을 이수받으면서 능력과 함께 자격을 인정받았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를 계기로 재교육이 더욱 확대되었다. 훈련관으로 하여금 諸衛上大將軍·各領將軍과 提軍官 등을 모아 諸家兵書들을 강습하게 하였다.⁶⁵⁾ 諸衛上大將軍·各領將軍 등은 무반의 최고위직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오랜 경력의 소유자들이었다. 따라서 이들에게 병서를 강습했다는 것은 재교육의 실시를 의미했다.

한편 훈련관에서 기존 무반의 고위자 및 양반자제들이 강습받았던 것과는 별도로 六學의 하나로 兵學을 설치하여 良家子弟들을 肄習시켰다. 六學은 雜學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했던 것인데,⁶⁶⁾ 따라서 훈련관과는 교육 수준이 달랐을 것이다. 더구나 양가자제를 교육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뚜렷했다. 신분상의 구별이 분명했던 만큼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양반자제라 해서 훈련관을 거치기만 하면 출세가 보장되고, 병학을 나온 양가자제는 고위직 오르기가 불가능했던 것은 아니었다. 실력을 검증하는 장치가 확실하게 설정되었다. 따라서 신분이 떨어지더라도 능력이 탁월

63) 『太祖實錄』卷5, 太祖 3年 2月 己亥, 1冊, 59쪽.

64) 柳昌圭, 『朝鮮初 親軍衛의 甲士』, 『歷史學報』106, 歷史學會, 1985 참조.

65) 『太祖實錄』卷8, 太祖 4年 2月 己巳, 1冊, 82쪽.

66) 兵學 외에 律學, 字學, 譯學, 醫學, 算學이 속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분명했다(『太祖實錄』卷4, 太祖 2年 10月 己亥, 1冊, 51쪽).

하다면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자 했던 것이 정도전 등의 구상이었을 것이다.⁶⁷⁾

군사교육체계에 대한 개편작업을 통해 良將을 양성하는 것과 더불어士卒들을 체계적으로 단련시켜 지휘관들과 신뢰를 쌓게 해서 일체감을 조성하는, 즉 衆心을 하나로 묶는 훈련체계의 수립에도 박차를 가했다. 이를 통해 ‘不敎民戰’의 폐를 제거하고자 했다. 특히 이 문제를 진법훈련의 도입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

태조 3년 1월 정도전의 주도로 蠡祭⁶⁸⁾가 베풀어졌는데,⁶⁹⁾ 같은 해 9월 中軍의 蠡을 講武堂으로 옮겼다.⁷⁰⁾ 講武堂과 관련해서, 세종 4년 11월 예조에서 올린 啓의 내용이 주목된다.

삼가 太淸觀의 설치 유래를 아뢰면, 그 重創古記에 ‘國初에 太淸觀을 文廟의 오른쪽에 설치하고 天皇·太一等의 神에게 醮祭를 지냈으며, 또 관의 남쪽에 講武堂을 설치하여 提調官을 두고, 敎學官·五軍錄事·六衛參軍을 두어 陣法을 講習하였다’고 했다.⁷¹⁾

위 기사에서 國初란 건국초기를 가리키며, 講武堂은 太淸觀의 남쪽에 있었고, 文廟와 이웃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국가의 중요 祭祀가 베풀어졌던 장소에 위치했으므로, 蠡을 옮겼던 것은 蠡祭의 실시와 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講武堂에서는 陣法의 講習이 실시되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관원들도 배치되었음이 확인된다. 그 명칭을 보면 대개 檢관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점은 훈련관과 비슷했다.⁷²⁾ 차이도 보이는데, 훈련관에서는 주로 諸家

67) 이 같은 원칙은 그 계열에서 내세웠던 능력 본위의 官僚制 運營論에 영향을 받아 마련된 것으로 생각된다(都賢喆, 『高麗末 士大夫의 政治思想研究』, 一潮閣, 1999, 181~190쪽).

68) 軍旗에 대해 지내는 祭祀였다(韓祐勅等, 앞의 책, 418쪽).

69) 『太祖實錄』卷5, 太祖 3年 1月 丁卯, 1冊, 54쪽.

70) 『太祖實錄』卷6, 太祖 3年 9月 癸丑, 1冊, 70쪽.

71) 『世宗實錄』卷18, 世宗 4年 11月 辛未, 2冊, 512쪽.

72) 『太祖實錄』卷1, 太祖 1年 7月 丁未, 1冊, 24쪽. “訓練觀皆兼.”

兵書を 講하면서 각종 시험을 주관했던 것에 비해 講武堂에서는 대개 진법을 강습했던 것 같다. 그러나 위 기사만으로는 진법강습이 누구를 대상으로 무슨 목적으로 행해졌는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

진법훈련의 실시와 관련하여 『朝鮮經國典』의 다음 기사가 주목된다.

周禮에 따르면 봄사냥·여름사냥·가을사냥·겨울사냥으로 武事를 강습하여 때를 거르는 일이 없었고, 金鼓, 旗麾의 절차를 밝히고, 전진과 후퇴, 擊刺하는 방법을 익히면, 병사는 장수의 뜻을 알고 장수는 병사의 사정을 알아, 전진해야 할 때에는 함께 전진하고, 후퇴할 때 함께 후퇴하였으며, 방어하면 견고하게 하고 싸우면 이겼으니, 이는 평소 교습했던 바가 있기 때문이었다. …… 신(鄭道傳)은 그(諸葛武侯)의 뜻을 조술하여 五行陣出奇圖를 지었고, 또 司馬法를 가감하여 講武圖를 지어 바쳤더니, 전하는 이것을 보고 좋다고 칭찬하고 군사에게 명하여 익히게 하였다.⁷³⁾

위에서 정도전이 『五行陣出奇圖』와 『講武圖』를 태조에게 찬진했으며, 이들에 의거해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도록 허락받았음이 확인된다. 하지만 두 책의 정확한 내용은 불명인데, 대개 金鼓旗麾에 의한 進退坐作的 훈련과 結陣 및 習陣의 내용을 담았으리라고 추정되므로,⁷⁴⁾ 진법훈련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⁷⁵⁾ 따라서 비슷한 시기에 찬진했던 『四時蒐狩圖』⁷⁶⁾와 짝을 이룬다면 그의 구상에 따른 습진체계가 일단 자리잡게 되는 셈이다. 그리고 진법훈련을 통해 장수와 병사가 서로의 뜻과 사정을 알아서 진퇴를 함

73) 鄭道傳, 『朝鮮經國典』 下, 「政典」, 敎習, 한국문집총간 5, 민족문화추진회, 433~434쪽.
“孔子曰 不教民戰 是謂棄之 周禮 春蒐夏苗秋獮冬狩 以講武事 無闕於時 明金鼓旗麾之節 習進退擊刺之定 兵識將意 將識士情 可以進則與之偕進 可以退則與之偕退 守則固 戰則勝 此教之有素也 …… 臣祖其意 作五行陣出奇圖 又增損司馬作法講武圖以獻 殿下稱之曰善 命軍士肄之.”

74) 김광수, 「鄭道傳의 『陣法』에 대한 고찰」, 『陸士論文集』 51, 陸軍士官學校, 1996, 216쪽.

75) 위의 논문, 213쪽 註) 4.

76) 『太祖實錄』 卷4, 太祖 2年 8月 癸巳, 1冊, 48쪽.

게 할 때 비로소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실전에서도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했다. 즉 진법훈련이 단지 전투능력만을 배양했던 것이 아니라 장수와 사졸 간의 일체감을 조성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하지만 처음에는 節制使들이 거느린 군사 중에 武略者를 골라 陣圖를 가르쳤는데,⁷⁷⁾ 毬庭에서 鼓角旗麾, 坐作進退의 절차를 익혔다고 한다.⁷⁸⁾ 아마도 『五行陣出奇圖』와 『講武圖』에 의거해서 실시했던 것으로 추정된다.⁷⁹⁾ 따라서 모든 사졸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했던 것은 아니며 시범적으로 실시했을 뿐이다. 그런데 태조 3년 3월에 임금이 臨津壽美浦에 행차하여 정도전에게 五軍陣圖를 講하게 하고, 또한 연습하는 것을 친히 관람하되 여러 節制使들에게 하지 않거나 영을 위반하면 처벌하겠다고 했다.⁸⁰⁾ 태조 앞에서 五軍陣圖, 즉 『五行陣出奇圖』⁸¹⁾를 강했다는 것은 앞서 毬庭에서 節制使들이 거느린 군사 중에 武略者를 골라 가르쳤던 때와 비교해서 격식이나 규모면에서 차이가 컸다. 전에는 소수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했다면, 이때부터 전군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더욱이 태조가 직접 節制使들을 독려했다는 것은 그만큼 힘을 실어준 조치였다. 그 동안 독자적인 지휘권을 행사했던 절제사들의 휘하 군사들도 이제부터 의무적으로 진법훈련을 받게 되었다. 아마도 이를 계기로 해서 앞서 언급했던 巴講武堂에서 진법을 강습하게 되었을 것이다.

마침내 태조 4년에 三軍府에 명해 『蒐狩圖』와 『陣圖』를 간행케 했다.⁸²⁾ 이것도 정도전이 찬진했던 것으로, 왕명으로 訓導官을 두어 가르쳤다.⁸³⁾

77) 『太祖實錄』卷4, 太祖 2年 11月 庚戌, 1冊, 51쪽.

78) 『太祖實錄』卷4, 太祖 2年 11月 癸丑, 1冊, 51쪽.

79) 김광수, 앞의 논문, 216쪽.

80) 『太祖實錄』卷5, 太祖 3年 3月 庚戌, 1冊, 60쪽.

81) 김광수, 앞의 논문, 216쪽.

82) 『太祖實錄』卷7, 太祖 4年 4月 甲子, 1冊, 76쪽.

83) 訓導官은 講武堂의 敎學官과 서로 통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치하는지의 여부가 명확치 않으나,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各節制使·軍官·西班各品·成衆愛馬뿐만 아니라 심지어 능통한 사람을 各道에 파견하여 강습시켰다.⁸⁴⁾ 진법훈련을 지방군까지 확대시켰다. 중앙에서는 三軍府에서 날마다 節制使에서 散員까지를 모아 市街에서 習陣했으며,⁸⁵⁾ 지방의 各道·各鎮에는 陣圖訓導官을 보냈다.⁸⁶⁾ 이렇게 해서 정형화되고 표준화된 진법훈련이 전국에 걸쳐 실시될 수가 있었다.

태조의 후원 아래 정형화되고 표준화된 진법훈련을 中外에 걸쳐 실시했던 것은 각 절제사의 시위패에 대한 사적 영속관계를 제약할 목적 때문이라고 파악된다.⁸⁷⁾ 동시에 주목되는 점은 정도전이 추구했던 진법훈련의 방식과 관련된 효용성에 관한 문제였다. 『三峯集』에 실린 「陣法」의 正陣에 따르면,

講武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金鼓와 旗麾를 가지고 進退坐作의 절차를 분명히 하는 것은 衆心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이며, 槍劍弓矢를 가지고 擊刺와 射御의 기술을 연마하는 것은 衆力을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입니다. 衆心이 하나로 합치지 않으면 隊伍를 정돈할 수 없고, 衆力이 하나로 뭉치지 않으면 敵을 이길 수 없습니다. …… 지금의 講武하는 법을 보면 金鼓와 旗麾를 가지고 進退坐作의 절차를 자세히 가르치고, 槍劍弓矢를 가지고 擊刺와 射御의 기술은 연습하지 않고 있으나, 이것은 생략하자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는데 순서가 있어서입니다.⁸⁸⁾

라고 하였다. 이는 군사훈련에서 槍劍弓矢를 가지고 擊刺와 射御의 기술을 익히는 전기연마 위주의 연습보다 金鼓와 旗麾를 가지고 進退坐作의 절차

84) 『太祖實錄』卷11, 太祖 6年 6月 甲午, 1冊, 107쪽.

85) 『太祖實錄』卷12, 太祖 6年 8月 戊子, 1冊, 109쪽.

86) 위와 같음.

87) 閔賢九, 앞의 책, 110~111쪽.

88) 鄭道傳, 『三峯集』, 「陣法」, 正陣, 국역삼봉집 I, 민족문화추진회, 382~383쪽. “講武之道有二焉 以金鼓旗麾 明進退坐作之節 所以一衆心也 以槍劍弓矢 習擊刺射御之便 所以一衆力也 衆心不一 無以整部伍 衆力不二 無以勝敵人 …… 今見講武之法 詳於金鼓旗麾進退坐作之節 未及槍劍弓矢擊刺之習 非略之也 教之有序也.”

를 분명히 하는 陣形 및 그 운용법을 우선시한 것이다.⁸⁹⁾ 후자를 우선시했던 것은 전자가 덜 중요하기 때문은 아닐 것이며, 당시 상황에서 먼저 衆心을 하나로 합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것이 달성된 뒤 衆力을 하나로 뭉치도록 연습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인식했다. 이는 앞서 『조선경국전』의 “병사는 장수의 뜻을 알고 장수는 병사의 사정을 알아, 진퇴를 함께 해야 한다”는 것, 즉 상호간의 일체감과 신뢰감을 쌓게 하고 그 기반 위에서 실전 연습을 행함으로써 어떤 경우에서나 떨어져 나가게 하려는 것이다.

이로써 군사교육체계의 개편을 통해 문호를 개방하여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장수를 발탁해서 적절히 배치하는 것을 전제로 전국에 걸쳐 정형화되고 표준화된 사졸들의 훈련체계가 새롭게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교육 및 선거를 통해 능력이 검증되어 발탁된 장수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사졸의 체계적 훈련을 실시해서 상하간의 유대감을 조성하여 드디어 衆心이 하나가 되어 ‘不敎民戰’의 폐를 극복하도록 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시위패 등에서 볼 수 있던 사적인 관계가 강하게 작용했던 군의 통수체계를 공적인 질서가 관철되게 탈바꿈시키는 계기로 삼고자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훈련체계하에서는 출신성분 및 배경보다도 문호 개방을 전제로 교육 및 훈련과정에서 발휘되는 능력과 실력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

(2) 私兵革罷 以後 軍事訓練體系의 修正

체제개혁의 방향 및 태조의 후계자 자리를 놓고 개국공신들 내부에서 첨예한 갈등이 벌어진 끝에 1398년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다. 이때 그 동안 정국을 주도했던 정도전, 남은 등이 제거되고, 태조가 퇴위하면서 정권이

89) 김광수, 앞의 논문, 216쪽.

교체되었다. 한편 권력장악에 성공했던 태종계열은 정도전 등이 추진해왔던 개편작업을 대폭 수정하였다.⁹⁰⁾ 훈련체제도 예외가 아니었다.

정종이 즉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諫官의 상言에 의해 남은과 가까웠던 전직 지방군 지휘관들이 대거 숙청되었는데, 구실 가운데 하나가 백성의 고통을 돌보지 않고 제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을 실시했다는 것이다.⁹¹⁾ 정도전 등이 집요하게 추진했던 군사훈련이 도리어 민폐만 끼쳤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반대파의 제거 및 훈련체계를 재검토하기 위한 명분 축적의 의도가 강하지 않았는가 한다.

태종이 즉위한 뒤 훈련체계에 관한 수정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때 전술이 부족한 將帥로써 가르치지 않은 民으로 하여금 싸우게 하는 과거의 폐단을 불식시키고자 良將의 양성을 전제로 전국에 걸쳐 士卒을 정형화되고 표준화된 훈련체계에 의해 단련케 하고자 했던 기본 원칙을 뒤집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정도전 등이 추구했던 정책에 경도되면 최고 통수권자인 국왕의 입장이나 의지가 소홀하게 여겨지거나 축소될 것을 우려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체계개편의 방향을 수정하여 최고 통수권자의 의사가 분명하게 반영되는 절차 및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 그러므로 정도전 등의 방안처럼 문호가 개방된 교육 및 훈련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유능한 인물이 발탁되도록 하기보다는 엄격한 선발 절차를 통해 걸러진 인물들을 대상으로 최고 통수권자가 친히 임용하는 사람들을 단련하는 형태로 바꾸려 했다. 즉, 선발과 교육·훈련과정을 분리해서 후자는 전자를 통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그 과정에서 탁월한 성적을 거둔 자를 출세시키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언뜻 표면상으로는 순서 및 절차만 바꾼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체계의 성격이 크게 변모할 전망이다.

먼저 양장의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부터 살펴보면, 무반의 가장 중요한 등용문인 무과를 태종 2년에 처음 실시하면서,⁹²⁾ 훈련관에서 강습을 받아

90) 韓永愚, 『朝鮮建國의 政治·經濟 基盤』, 『朝鮮前期社會經濟研究』, 乙酉文化社, 1983, 59쪽.

91) 『太祖實錄』卷15, 定宗 卽位年 10月 乙巳, 1冊, 139쪽.

야 한다던가, 또는 시험을 치르면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거치는 과정을 마련하지 않았다. 다만 응시자가 훈련관에 나가 시험을 보았으며, 이때 훈련관원들은 시험관으로 참가했을 뿐, 강습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⁹³⁾ 훈련관에서 실제로 교육받는 층은 武科入格者들이었다. 出身한 뒤 業을 돌아보지 않아 문제라며 이제부터 훈련관에서 文科의 例에 의해 5品 이하는 武經을 배우고 익히며, 연말에 高下를 매겨 1등을 서용하게 했다.⁹⁴⁾ 따라서 成均館처럼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강의했던 것이 아니라 입격자를 재교육시키고 그 과정에서 우수한 자를 승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더구나 태종은 성균관과 마찬가지로 훈련관에도 田地를 지급하여 무사를 양성케 하자는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⁹⁵⁾

선발 및 임용은 최고 통수권자 고유의 몫이며 훈련관은 입격자들을 대상으로 재교육을 담당하도록 했는데, 이 원칙은 또 다른 병학교육기구인 武學의 성격 변화에도 관철되었다. 태종 6년에 河崙의 건의로 十學을 설치했는데, 武學은 儒學 다음이었다. 각기 提調官을 두었으며, 儒學은 見任三館 7品 이하만으로 시험하게 하고, 武學을 포함한 九學은 時散을 勿論하고 4品 이하부터 四仲月에 考試해서 그 高下를 정해 黜陟의 憑據로 삼았다.⁹⁶⁾ 태조 때 六學의 하나로 설치된 兵學은 양가자제를 대상으로 삼았는데,⁹⁷⁾ 위 武學은 관인층이 주대상이었다. 兵學이 양가자제들을 무관으로 양성하는 일에 주력했다면, 武學은 관인층을 고시해서 성적에 따라 黜陟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었다. 즉, 정예를 골라 출세시키는 데 비중을 두었다. 이는 十學에 각기 提調官을 두었다는 사실에 의해 더욱 분명해진다. 提調官은 성격상 교육보다 고시에 역점을 두었을 것이기 때문이다.⁹⁸⁾ 따라서 고위 관

92) 尹薰杓, 앞의 논문, 21쪽.

93) 『太宗實錄』卷3, 太宗 2年 1月 己丑, 1冊, 222쪽.

94) 『太宗實錄』卷22, 太宗 11年 12月 丁未, 1冊, 614쪽.

95) 『太宗實錄』卷33, 太宗 17年 閏5月 己未, 2冊, 163쪽.

96) 『太宗實錄』卷12, 太宗 6年 11月 辛未, 1冊, 379쪽.

97) 『太祖實錄』卷4, 太祖 2年 10월 己亥, 1冊, 51쪽.

직자들과 가깝거나 그들의 눈에 띄는 인물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전망이었다. 이렇게 해서 군사교육기구들은 선발·임용과 분리된 채 대개 기존 무반의 재교육을 담당하였다.

태종은 즉위한 뒤 甲士의 복립을 필두로 별시위, 내금·내시위 등의 兵種을 신설했는데, 이는 시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며, 그 바탕에 철저한 집권화 시책이 깔려 있었다.⁹⁹⁾ 무반에 버금갈 정도의 최정예 군사였던 이들도 입속하기 전에 어떤 기관에 소속되어 교육을 받았던 것은 아니었다. 입속한 뒤부터 부단히 단련시켜야 한다는 의도에서 훈련을 받아야 했다. 먼저 才藝 가운데 가장 중시했던 翫射부터 의무적으로 실시했다. 番外者를 대상으로 三軍¹⁰⁰⁾은 6일 동안 翫射 3일, 巡綽 1일, 給閑 2일로 하고, 別侍衛·鷹揚衛는 9일에 翫射 5일, 巡綽 1일, 給閑 3일로 하고, 나머지 成衆愛馬도 이에 의거하여 실시하되 訓練觀員이 이를 고찰하며, 그 위에 병조에서 勤慢을 살피게 했다.¹⁰¹⁾ 감사 이하의 시위군은 番外라고 해서 쉬었던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翫射해야 했다.¹⁰²⁾ 그리고 습사를 훈련관원에게 확인받아야 했으며, 다시 이들의 勤慢을 병조가 고찰하도록 함으로써 세심

98) 이러한 사실은 세종 즉위년 12월 예조에서 “十學에 提調만 있고 參佐官이 없어 大臣이 친히 文書를 잡고 있으며, 더구나 樂學·醫學 등은 평소에 가르치지도 않다가 임시로 考講하니, 人材를 뽑는 뜻에 어긋남이 있다”고 啓했던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世宗實錄』 卷2, 世宗 卽位年 12月 壬辰, 2冊, 291쪽).

99) 閱賢九, 앞의 책, 127~133쪽.

100) 三軍은 甲士를 가리킨다(尹薰杓, 『朝鮮初期 甲士의 統率體系』, 『實學思想研究』 17·18 合輯, 母岳實學會, 2000 참조).

101) 『太宗實錄』 卷31, 太宗 16年 3月 壬寅, 2冊, 106쪽.

102) 그렇다고 出番日에만 翫射케 했던 것은 아니었다. 內禁衛와 別侍衛에게 禁園에서 습사케 하거나(『太宗實錄』 卷19, 太宗 10年 2月 甲寅, 1冊, 530쪽), 入直하던 內禁衛와 內司僕이 宮城 안에서 습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말라고 명하기도 했다(『太宗實錄』 卷31, 太宗 16年 1月 丙午, 2冊, 100쪽). 따라서 入直日에도 습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문제는 입직하지 않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습사하도록 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늘 단련하도록 제도적으로 규정해 놓고 이를 어기거나 성적이 나쁘면 징계 조치 따위를 실시하도록 했다는 사실이 의미가 있다.

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훈련관원들이 관리했다는 것으로 보아, 아마 습사도 그 곳에서 실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때 시위군의 증설과 함께 습사가 의무화되자 자연스럽게 인원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관리시설이라든가 敎場의 마련이 요구되었다. 태종 16년 李原의 건의로 射廳의 설립이 추진되었다.¹⁰³⁾ 그런데 成侃의 「訓練院射廳記」에 따르면, 태조가 일찍이 훈련에 관한 일을 발휘했지만, 태종이 비로소 도성의 동쪽에다가 훈련관을 세우고 그 남쪽에 大廳을 조성했으니, 이것이 곧 射廳이며, 병조에 명해 鎮撫所 및 훈련관원들을 통솔하여 군사를 집합시켜 활쏘기를 했다고 한다.¹⁰⁴⁾ 즉, 훈련관에 사청을 조성해서 군사들로 하여금 습사케 했던 것이 태조가 아닌 태종 때 이루어진 일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한편 射廳의 용도와 관련해서 봄·가을로 습사할 때 병조당상·진무와 훈련관원이 會坐하는 곳인데, 전에는 건물이 없어 遮日을 쳐서 風雨를 가렸다고 한다.¹⁰⁵⁾ 따라서 시설면에서도 상당한 발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각 병종별로 出番日에 의무적으로 하는 것 이외에 봄·가을에 모두가 참가해야 하는 습사가 베풀어졌음도 알 수 있다. 따라서 훈련관의 각종 시설이 태종 때 정비되는 것과 더불어 평소에는 각 병종별로, 봄·가을을 맞이해서는 정기적으로 전체가 참가해서 습사하는 체계가 확립되었다. 그 위에 관리 담당 기구라든가 인원, 과정 및 절차까지도 체계적으로 정비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중앙에서는 시설까지 대대적으로 확충하면서 훈련 강도를 높였던 반면, 외방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武備가 중시되던 함길도에서도 春秋仲

103) 『太宗實錄』卷32, 太宗 16年 7月 乙巳, 2冊, 128쪽.

104) 成侃, 「訓練院射廳記」, 『眞逸遺稿』, 李朝名賢集 2, 成均館大學校大東文化研究院, 1986, 745쪽. “我太祖身屬囊韃 經營初創 大功既定 天命攸歸 謂兵雖不用 武備不可忘 首發揮訓練之事 太宗大王 駿惠前烈 通追先志 乃闢館於都之東 宏敞其南爲大廳 所謂射廳者是也 乃命兵曹 統鎮撫所暨本觀之員 大會軍士 較射于此.”

105) 『太宗實錄』卷33, 太宗 17年 5月 甲午, 2冊, 160쪽.

월에 무예를 訓習해야 하는 법이 있었지만, 수령들이 한갓 簿書期會로 여겨, 봉행하는 자가 많지 않다고 했다.¹⁰⁶⁾ 국경지역에서조차 제대로 봉행되지 않았던 春秋仲月の 武藝訓習法이 다른 도에서 잘 운영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요인은 여러 가지였으나 당시 정책추진의 방향이 크게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시위군에 대해 개인적인 재예 단련에 속하는 習射와 더불어 부대전술에 해당하는 習陣도 실시했다. 태종 때에도 양자의 상호 보완성에 대해 확실하게 인식하였다.

田甫를 虎勇侍衛司大護軍으로 삼았다. 임금이 甫에게 이르기를, “듣건대, 鄭道傳이 진법을 隸習할 때에 네가 司馬였다고 하는데, 지금도 진법을 잊지 아니했느냐?” 하니, 甫가 답하기를, “신이 스스로 능한 것이 아니고, 다만 진법에 의하여 행했을 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三軍甲士·鷹揚衛·別侍衛, 그리고 左右人들에게 진법을 隸習시켜 坐作進退의 절차를 알게 하려고 하니, 네가 그것을 가르치도록 하라”고 하였다.¹⁰⁷⁾

위에서 태종이 정도전이 진법을 연습할 때 참여했던 田甫를 기용해서 본격적으로 훈련을 재개시켰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때와 달리 三軍甲士·鷹揚衛·別侍衛, 그리고 左右人 등이 연습의 주축을 이루었다. 이들은 대개 出番日에 의무적으로 습사해야 하는 시위군들이었다.

이를 계기로 習陣이 본래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우선 兵書習讀提調를 임명한 다음 田甫 등을 다시 陣圖訓導官으로 삼았다.¹⁰⁸⁾ 전자가 주로 병서를 가지고 병학을 이론적으로 강습시켰던 반면에 후자들은 대개 실습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마침내 이론과 실습 양자에 걸쳐 체계적인 습진의 차비가 갖추어졌다. 태종 9년 4월에 비로소 盤松亭에서 陣圖를 연습하였

106) 『太宗實錄』 卷35, 太宗 18年 1月 甲子, 2冊, 201쪽.

107) 『太宗實錄』 卷17, 太宗 9年 3月 甲子, 1冊, 478쪽.

108) 『太宗實錄』 卷17, 太宗 9年 3月 乙丑, 1冊, 478쪽.

다.¹⁰⁹⁾ 그 뒤에도 습진이 꾸준히 실시되었던 듯, 사졸들이 坐作進退의 절차와 敵을 공격하고 變에 應하는 법을 알고 있어, 한 사람도 습을 어기는 자가 없었다고 보고되기도 했다.¹¹⁰⁾

하지만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습진이 아직까지 제도화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에,

명하여 陣圖를 肄習하게 했다. 병조에서 啓하기를, “陣圖를 肄習하게 해야 하니, 入直한 上·大護軍, 三軍鎮撫·經歷·都事, 內禁·內侍衛·別侍衛·鷹揚衛 및 各門差備외의 甲士·別牌 등으로 하여금 馬兒를 가지고 날마다 肄習하게 하되, 그 중에서 삼가지 않는 자는 律에 비추어 罪를 論하게 하소서” 하였다.¹¹¹⁾

위에서 첫째, 陣圖의 肄習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자를 照律해서 論罪하도록 했다는 것은 의무적으로 참가할 것과 만약 이를 어기면 처벌하겠다는 것으로써 제도화된 실시를 의미했다. 즉, 권장이 아닌 의무사항이 되었다. 둘째, 馬兒라는 습진에 사용하는 도구를 이용함으로써 훈련방식의 정비라든가 효과 등을 한 단계 더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¹¹²⁾ 마지막으로, 陣圖의 肄習은 입직한 시위군의 통솔 책임자들과 그 휘하에 배속된 인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各門差備와 같이 절대로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되는 시위군을 제외하고는 책임을 맡은 지휘자들과 함께 肄習해야 했다. 이를 통해 시위군들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습진도 대개 중앙의 시위군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물론 別牌와 같이 번상하는 시위군¹¹³⁾에 대해서도 習陣所에서 預習하게 하여, 군사들로

109) 『太宗實錄』 卷17, 太宗 9年 4月 乙酉, 1冊, 481쪽.

110) 『太宗實錄』 卷19, 太宗 10年 4月 壬戌, 1冊, 545쪽.

111) 『太宗實錄』 卷33, 太宗 17年 5月 壬辰, 2冊, 160쪽.

112) 馬兒는 어휘상 『經國大典』에 나오는 麼兒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圖上習陣에 사용되는 도구로써 形名과 進退를 익혔다고 한다(韓汝沆 등, 앞의 책, 633쪽).

하여금 습을 알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였지만,¹¹⁴⁾ 정작 外方에서는 실시되지 않았다. 그것은 세종 3년 兵曹에서 ‘陣圖의 法이 軍國의 급무인데도 외방의 군사는 전연 연습하지 아니하였으니, 실로 非便하다’¹¹⁵⁾고 했던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세종 때에 들어와서 비로소 습진이 외방에서도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¹¹⁶⁾ 따라서 태종 때에는 무예의 訓習 등과 마찬가지로 습진도 주로 중앙군 위주로 실시되었다.

태종대에 들어와 사냥을 하면서 實戰 위주로 훈련하는 講武도 체계화되었다. 특히 이는 습사와 습진 등의 성과를 아우르면서 실전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적인 교련의 의미를 지녔다.¹¹⁷⁾ 그런데 태종대 실시되었던 것은 이전과 성격이 달랐다. 이미 태조 때부터 실시했다는 기록이 있음에도,¹¹⁸⁾ 태종은 강무는 비록 古制이나 태조 때에는 일찍이 講求하지 않았으며,¹¹⁹⁾ 上王 때 법을 세웠는데, 봄·가을 두 차례 실시하였다고 했다.¹²⁰⁾ 상왕은 정종을 의미하는데, 당시 정황을 미루어 태종이 강무법 제정을 주도했을 것이다. 즉 태조 때 했던 것과는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강무를 태종이 주창해서 실시했을 가능성이 컸다.

우선 방식이 달라졌는데, 강무 때 군사들에게 화살을 쏘지 못하게 했는데, 이를 계승했던 세종이 大君들만 馳射하게 했더니, 대군만 위하는 講武라고 時人들이 비난해서 將帥들도 馳射하게 했더니, 다시 장수만 위한다는

113) 閱賢九, 앞의 책, 124쪽.

114) 『太宗實錄』 卷19, 太宗 10년 4월 壬戌, 1冊, 545쪽.

115) 『世宗實錄』 卷12, 世宗 3년 7월 己巳, 2冊, 441쪽.

116) 『世宗實錄』 卷12, 世宗 3년 7월 戊子, 2冊, 444쪽.

117) 태종 16년 金汝知 등의 上疏에 따르면, “講武는 다만 말 달리고 활 쏘고 치고 찌르는 것만을 급무로 삼는 것이 아니라, 車徒를 簡하고 器械를 檢열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坐作進退의 절차를 알게 하는 것”이라 한다(『太宗實錄』 卷31, 太宗 16년 5월 甲寅, 2冊, 118쪽).

118) 『太祖實錄』 卷12, 太祖 6년 12월 癸巳, 1冊, 112쪽.

119) 『太宗實錄』 卷33, 太宗 17년 3월 戊申, 2冊, 154쪽.

120) 『太宗實錄』 卷6, 太宗 3년 10월 乙卯, 1冊, 280쪽.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¹²¹⁾ 따라서 태종 때 실시했던 강무는 종친들만 馳射하게 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태종 때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시기·동원 군사의 편성·방법과 내용 등의 면에서 후대의 전범이 될 만큼의 체계가 갖추어졌다고 하는데,¹²²⁾ 실제로 대규모의 병력 동원에도 불구하고 종친·장수를 위한 것으로 여겨졌다.¹²³⁾ 이와 더불어 강무를 행함에 있어 行伍를 정돈하여 軍습을 엄하게 하되 이를 어기는 자를 문책하는 것이 매우 중시되었다.¹²⁴⁾ 그 결과 태종 14년에 제정된 講武事宜에 따르면, 2品 이상이라도 습을 위반하면 啓問科罪하고, 3品 이하는 直斷하도록 했다.¹²⁵⁾ 실제 전투 상황이 아닌 강무중에 재상급 관리라 하더라도 군법을 엄격하게 적용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때의 강무는 최고 통수권자로서의 임금의 위상을 강하게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¹²⁶⁾

결과적으로 사병혁과 이후 정권을 장악한 태종계열에 의해 군사훈련체계가 상당히 큰 폭으로 수정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중시되었던 것은 계서화였다. 특히 국왕을 정점으로 집권적 통수체계를 수립하는 것과 더불어 중앙 위주의, 상층을 중심으로 해서 군사교육 및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었다. 그로 인해 국왕을 가까이에서 보필하는 무반층, 또는 시위군 조직에 속한 인원들에 대해서는 교육과 훈련의 강도를 높여 정예화되게 했다. 즉 정도전 등의 방식과 달리 교육 및 훈련 과정에서 능력이 뛰어난 인물들이 자연스럽게 부각되기보다는, 국왕 또는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 선발된 인물들을 대상으로 정예화를 위한 연수 등에 중점을 두었다. 이로써 장수와 사졸 간의 상호 신뢰에 바탕을 둔 衆心을 하나로 묶는 것보다 철저한

121) 『世宗實錄』 卷95, 世宗 24年 3月 庚午, 4冊, 403쪽.

122) 李瑁秀, 앞의 논문, 238쪽.

123) 朴道植, 앞의 논문, 416쪽.

124) 『太宗實錄』 卷6, 太宗 3年 10月 丙辰, 1冊, 280쪽.

125) 『太宗實錄』 卷27, 太宗 14年 2月 己巳, 2冊, 8쪽.

126) 尹薰杓, 「麗末鮮初 軍法の 運營體系와 改編案」, 『韓國思想史學』 21, 韓國思想史學會, 2003, 189쪽.

계서화에 의거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 양성된 정예분자들이 국왕을 보위하는 형태로 구성되게 전개되었던 점이 특징이었다. 이런 점들은 그 이후에도 확고한 원칙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궁극적으로 훈련체계의 기본 골격을 이루게 되었다.

4. 結 論

고려말 국내외 정세가 극도로 불안정해지면서 군의 출동이 매우 잦았다. 그러나 통수체제가 혼란에 처하면서 조직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고, 더구나 부족한 병력을 농민들을 징발해서 충당함에 따라 전투에서 사실상 제구실을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해 인명 피해는 말할 나위도 없고 민간의 소요 또한 커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하였다.

강력한 외적을 방어하기 위해 농민들을 급하게 군인으로 동원했던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제대로 훈련시키지 않은 채 바로 전장에 투입했던 것이 문제였다. 그 주된 요인 중의 하나는 훈련체계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한 탓인데, 이로 말미암아 ‘不敎民戰’의 사태를 초래함으로써 피해와 혼란을 증폭시켰다. 더구나 軍政의 문란으로 전술 능력이 부족한 자들이 장수들에 임명되는 경우가 늘면서 상황은 견잡을 수 없게 되었다.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서 習射都監의 복립이라든가 武藝都監과 같은 새로운 기구의 설립 등을 통해 군사훈련을 강화하고자 했다. 그러나 정부의 시도는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한계에 부딪쳤고, 반면 牌記를 거느린 몇몇 장수들은 휘하의 군대를 잘 단련시켰다는 평가와 함께 상당한 전공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나 軍政의 문란이 극심한 상태에서 장수들의 능력이 고르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면 군통솔체계가 기저부터 흔들리게 될지도 몰랐다. 이제 단지 군사훈련을 강화하는 조치만으로는 대처가 힘들고, 전반적인 제도개편이 수반되어야 했다. 마침내 위화도회군 이후 정계를 주도했던 급진개혁파 사대부들은 앞서 軍政과 軍令, 그리고 훈련체계를 각각 분리시켜 해결하고자 했기 때문에 실질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보고, 군정 및 군령에 관한 문제들을 서로 연계시켜 개편작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와 병행하여 체계적인 훈련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아울러 핵심을 衆心이 하나되게 만들며, 이것으로써 훈련시켜야 한다는 점에 두었다. 즉, 무능한 인물을 장수로 등용케 하는 군정의 혼란 및 ‘不教民戰’으로 인한 폐단 등을 상호 연계시켜 해결하는 방도를 강구하여 제기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개편작업은 조선에서 추진되었다. 이때 고려말 급진개혁파의 핵심이면서 개국공신이었던 鄭道傳 등이 중심이 되었다. 우선 문호 개방을 전제로 교육과 선거를 연계시켜 능력이 검증된 사람들을 무반으로 등용하려는 조치를 취하면서 訓練觀이라는 최고의 군사훈련 전문기구를 새로 설치했다. 이를 통해 군사교육을 강화해서 무예만이 아닌 병서에도 능통한 실력자들을 무반으로 등용하며 기존의 인사들에 대해서는 재교육을 실시하여 새로운 체제에 적합하게 만들려고 했다. 대개 양반자제들은 훈련관에서 강습을 받았는데, 양가자제들은 六學 중의 하나인 兵學에서 교육받도록 했다. 이러한 신분별, 층위별 교육 및 선발 과정을 통해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도태시키고, 배경이 대단치 않더라도 실력을 인정받으면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했다.

그리고 이러한 검증절차를 거쳐 능력과 자격을 인정받아 배치된 장수들로 하여금 士卒들과 함께 새롭게 창안된 진법서에 입각한 훈련 등을 받도록 해서, 전투력의 배양과 더불어 상호간의 신뢰 및 일체감도 쌓아 衆心이 하나가 되게 했다. 이렇게 해서 전국에 걸쳐 정형화되고 표준화된 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었다.

그러나 체제개혁의 방향 및 태조 후계자 문제로 개국공신 내부에 갈등이

벌어지면서 그 여파로 왕자의 난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정도전 등은 제거되고, 태종계열이 정권을 장악하였다. 그들은 우선 통수권 장악을 위해 군제개편의 방향을 큰 폭으로 수정하였는데, 훈련체제도 예외가 아니었다. 과거의 폐단을 제거하기 위해 전국에 걸쳐 정형화되고 표준화된 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점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했지만, 운영상의 목표가 달리 설정되도록 체계를 수정하였다.

먼저 良將의 양성과 관련해서 교육과 훈련을 반드시 선거 및 임용에 연계시키려 하지 않았다. 그 보다 최고 통수권자라든가 최상급자의 의지가 반영되는 절차나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로 말미암아 군사교육체계가 변모되었다. 訓練觀의 경우 선발과 임명에 직접 관여하기보다는 대체로 입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業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재교육시키는 기능이 중시되었다. 이는 十學의 하나로 병학교육기구로 설치된 武學의 성격 변화로 이어졌는데, 이 역시 양자자제 대신 기존의 무반층이 교육 대상이 되었다.

사병혁과 이후, 특히 태종계열이 추구했던 군제개편의 방향은 국왕을 정점으로 階序化된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최고의 정예군사들로 구성된 시위군의 여러 兵種이 새로 설치되었다. 이들도 무반과 마찬가지로 교육기구들이 선발과 임명에 직접 관여하기보다도 입속 이후의 연수를 주로 담당했다. 여러 병종의 시위군은 訓練觀의 射廳에 의무적으로 나와 習射 등을 해야 했으며, 그에 대한 관리 또한 訓練觀員이 담당했다.

한편 진법훈련 및 실전 감각을 익히기 위해 실시하는 講武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정작업을 추진했는데, 대체로 중앙의 시위군 위주로 실시되게 만들었던 것이 특징이었다. 시위군 지휘관 및 그 휘하 부대에게는 습진에 능통해야 한다며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어기면 처벌했다. 강무의 경우에도 대규모 병력이 동원되었지만 실제로 군사보다 종친·장수 위주로 운영되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지방군에 대해서는 소홀한 점이 많았다.

따라서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집권적 통수체계의 수립과 더불어 중앙 위주의, 상층을 중심으로 하는 훈련체계가 구축되도록 했다. 이로 인해 국왕

의 측근에 있는 무반층 및 시위군에 대해서는 교육과 훈련의 강도를 높여 정예화되도록 했다. 그 과정에서 장수와 사졸 간의 상호 신뢰에 바탕을 두고 衆心이 하나로 되게 하는 것보다 철저한 계서화에 의거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 양성된 정예분자들이 국왕을 보위하는 형태로 구성되게 만들었다. 이런 점들은 그 이후에도 확고한 원칙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궁극적으로 훈련체계의 기본 골격을 이루게 되었다.

(원고투고일 : 2004. 10. 11, 심사완료일 : 2004. 11. 10)

주제어 : 군사훈련체계, 장수, 사졸, 정도전, 태종

K C I

<ABSTRACT>

The Reformation of the Martial Training System from
the late stage of the *Goryeo* Dynasty to the
early stage of the *Joseon* Dynasty

Yoon, Hoon-pyo

In the late stage of the *Goryeo* Dynasty, there rose a big confusion in getting into martial action by the huge troops. Especially, the Martial Training System was confused. There was a great loss in the Armed Forces because the soldiers never experienced the Martial Training and were just the ordinary public.

As the war was prolonged and the loss was growing bigger, the government of the *Goryeo* Dynasty tried to solve the problems. The Government built the new Bureau of Martial Training. However, as the government's countermeasures were just temporary, they had many limitations in those.

After marching the Army back from the *Wihwa* Island on the *Yalu* River, the radical party of the *Sadaebu* called Literary who took the office, began to reform the Martial Training System. Especially, the bureau of personnel for officers was reformed, and then it prevented the men of no ability from being a General Officer. It was tried make the system to train the civilians who were drafted soldiers.

The Reformation Works of the Martial Training was led by *Jung Do-jeon*. He reformed the Training System for officers out-and-out through introducing the New Operating Principles. He tried to reform the Training System for soldiers, too. He tried the method of combining the officers and

soldiers by means of confidence and integration with each other.

However, the Reformation of the Martial Training System was not completed owing to the complex situation at that time. And a New Dynasty, the *Joseon* took the Office. In the early stage of the *Joseon* Dynasty, it was *Jung Do-jeon* that led the Reformatory Works of the army field. He reformed the whole Martial Training System in order to assign the able officers to important jobs in the army. The soldiers were trained to keep the large battle formation. In processing the training procedures, the system with the able office controlling the soldiers was built.

However, the Revolt of Prince got rid of *Jung Do-jeon* and his party, and the King *Taejong* and his followers took the office. The King *Taejong* had the same idea of *Jung Do-jeon* in the Martial Training System, but had the different view in practicing the method. Finally, in A.D. 1400, taking the opportunity of abolishing private armed retinues, and instituting centralized military control, the system that the King commanding the army was established. And the Operating System of the Martial Training was reformed.

The main point of reforming the Martial Training System was the ranking. In fact, high ranked officers in the central bureau had to take the study on the army. The lower ranked guard soldiers of the King had to take the train of shooting arrows and battle array. They were intended to be the crack continent. However, the soldiers of outskirts received a little contention. Therefore, the Martial Training System which focused on the central bureau and high ranked personnel was formed.

Key Words: Martial Training System, General Officer, Soldier, *Jung Do-jeon*,
King *Taejong*